

「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」 일부 개정안

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”을 “산업통상부 감사규정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“산업통상부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산업통상자원부소관”을 “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산업통상부소관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“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”을 “산업통상부 소관 법률”로, “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무”를 “산업통상부 소관 사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각각 “산업통상부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부서”를 “산업통상부 감사담당부서”로, “산업통상자원부 및”을 “산업통상부 및”으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“산업통상부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산업·기술·무역·통상·에너지·회계”를 “산업·기술·무역·통상·자원·회계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단서 중 “복무감사의 경우”를 “다음 각 호의 경우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복무감사 등 감사실시의 예고로 감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

로 판단되는 경우

2. 그 밖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예고 통지 없이 바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제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주의 또는 경고 요구 :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,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

제35조제1항 본문 중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“산업통상부”로 한다.

제36조제4항 중 “규제개혁법무담당관”을 “법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2항제1호 중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“산업통상부”로 한다.

제44조제1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“산업통상부”로 한다.

제48조 중 “2025년 1월 1일”을 “2026년 3월 1일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 <제2026-00호, 2026. . .>

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」 일부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</u>	<u>산업통상부 감사규정</u>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자체감사”란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(이하 “장관”이라고 한다)이 제2호에 따른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·점검·확인·분석·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2. “자체감사대상기관”이란 다음과 같다.	2. ----- -----.
가.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본부 및	가. <u>산업통상부</u> -----

그 소속기관

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산업통상자원부소관 공공기관

다. (생략)

라.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. 다만,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에 한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3. “자체감사 등”이란 자체감사,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, 일상감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모든 감사활동을 말한다.

4.·5. (생략)

제7조(행정감사) ① 장관은 행정감사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참여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.

② 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

나. -----
-----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산업통상부소관 -----

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 -----
----- 산업통상부 소관 사무-----
-----.

-----.

3. -----

-----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4.·5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행정감사) ① -----

----- 산업통상부 -----
-----.

② -----

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사업
2. 국가위임 사무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하는 사무

③ (생략)

제8조(일상감사) ①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부서의 장(이하 “감사관”이라 한다)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·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, 계약업무, 예산관리 업무 및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법성·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9조(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)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감사담당자를 임용하여야 한다.

-----.

1. 산업통상부-----

2. ----- 산업통상부-----
부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일상감사) ① 산업통상부 감사담당부서-----
----- 산업통상부 및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) ---
--- 산업통상부 -----

-----.

1. ~ 3. (생략)

제12조(외부전문가 등의 참여) ① 감사관은 산업·기술·무역·통상·에너지·회계 등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필요하면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, 이들을 제16조에 따른 감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9조(실지감사의 통지) ① 감사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복무감사의 경우는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.

<신설>

<신설>

② (생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외부전문가 등의 참여) ① ----- 산업·기술·무역·통상·자원·회계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실지감사의 통지) ① -----

-----.
----- 다음 각 호의 경우에 -----

-----.

1. 복무감사 등 감사실시의 예고로 감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2. 그 밖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예고 통지 없이 바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)

① 장관 또는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·행위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각 호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주의 또는 경고 요구 :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안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시정이 불가능하거나, 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동일·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경고 요구

5.·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35조(감사결과의 공개) ①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을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, 재심의 신청이 된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한 경우 감

제32조(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)

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주의 또는 경고 요구 :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,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

5.·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감사결과의 공개) ① ----

----- 산업통상
부-----

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36조(감사심의회) ① ~ ③ (생략)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,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혁신행정담당관, 규제개혁법무담당관, 해당 감사 관련 부서의 장, 위원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사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40조(면책기준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
---.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감사심의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법무담당관 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40조(면책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. -----

다.

1. 공무원 등이 감사원이나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부서에 제4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

2. (생략)

제44조(감사의 신청)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(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부서의 장 포함) 등은 제4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‘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’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48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-.

1. ----- 산
업통상부 -----

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44조(감사의 신청) ① -----
-----산업통상부 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재검토기한) -----

2026년 3월 1일 -----

-----.

[별지 제7호 서식] 처분요구서

기 관 명

통 보

제 목

소 관 기 관

조 치 기 관

내 용

관계기관 의견 (및 검토결과)

조치할 사항